

2014년 관공서의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따른 대체휴일 적용안내

□ 배경

-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 개정안 의결 및 도입확정(2013.10)

【대체공휴일이란?】

- ① 설날전날, 설날, 설날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1일,2일) 또는 추석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- ② 5월5일(어린이날)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참고)

-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·추석 연휴와 어린이 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

□ KT 적용

- 단체협약 제61조(유급휴일) 및 복무관리지침 제23조(휴일) 1항 관련
 -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을 포함하여 휴일로 정의하고 있음
- 따라서, 올해 대체휴일제 첫번째 적용일은
 - 추석 전날인 2014년 9월 7일이 ‘일요일’이므로
 - 첫번째 비공휴일인 **9월 10일(수)에 대체휴일 적용**예정

